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김순영
대한민국 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58 석탄회관빌딩 10층

발송일 (일/월/년) 2018년 09월 12일 (12.09.2018)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OF18P055PCT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06443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06월 07일 (07.06.2018)

우선일 (일/월/년)
2017년 06월 30일 (30.06.2017)

국제특허분류(IPC)
A61K 8/02(2006.01)i, A61K 8/06(2006.01)i, A61K 8/92(2006.01)i, A61Q 1/06(2006.01)i

출원인
(주)아모레퍼시픽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8년 09월 12일 (12.09.2018)

심사관
이기철
전화번호 +82-42-481-3353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2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12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2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KR 10-2013-0045406 A (오즈카 세이야쿠 가부시기가이샤) 2013.05.03

D2: WO 2010-063155 A1 (EVONIK DEGUSSA (CHINA) CO., LTD.) 2010.06.10

D3: KR 10-1989-0001695 B1 (럭키 주식회사) 1989.05.18

1. 신규성 및 진보성

1.1. 독립항: 청구항 1

본 국제출원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로 여겨지는 인용문헌 D1에는 유상 및 수상을 함유하는 수중유형 에멀전인 입술용 고형 조성물에 관한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1; 실시예 1-3 참조).

청구항 1은 화장료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하여 75 중량% 이상의 유상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조성물 대비 52.1 중량%의 유상을 포함하는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인용문헌 D2에 화장품에 사용되는 조성물 대비 70 중량% 이상 고함량의 유상부를 포함하는 수중유 에멀전이 구성되며, 상기 고함량의 유상부를 갖는 수중유 에멀전은 피부에 적용되어 에몰리언트 오일을 빠르게 방출하거나, 보습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1, 10, 11; 페이지 12, 라인 13-29; 표 1, 2 참조).

인용문헌 D1 및 D2 모두 화장료에 관한 동일 기술 분야임을 고려하여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 D2의 유상 함량 범위를 인용문헌 D1의 조성물에 적용하여 청구항 1의 발명을 구성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은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1.2. 종속항: 청구항 2-10

1.2.1. 청구항 2, 3, 7 및 10

청구항 2는 유상부 내 왁스의 함량에서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왁스의 함량(실시에 1 참조)과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균등한 효과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보통의 반복 실험 등을 통하여 도출 가능한 최적 내지 호적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청구항 3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유동 파라핀, 칸델리라 왁스, 수소첨가 호호바유, 폴리옥시에틸렌 경화 피마자유와 대응됩니다 (실시에 1 참조).

청구항 7은 조성물의 경도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용문헌 D1 및 D2와 차이가 있으나, 인용문헌 D1에 립스틱이 충분한 경도를 가지고 있다고 기재된 점을 고려할 때(단락 [0007] 참조), 상기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경도기를 이용한 단순한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치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다른 구성의 곤란성이 없습니다.

청구항 10은 입술 도포 시 수상부에 함유된 색소가 입술에 착색된다는 점에서 인용문헌 D1 및 D2와 차이가 있으나, 인용문헌 D1에 착색제를 포함하는 립스틱이 기재된 것을 고려할 때(단락 [0061] 참조), 상기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 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2, 3, 7 및 10은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1.2.2. 청구항 4-6

청구항 4는 스틱의 표면이 필름형성제로 코팅되었다는 점에서 인용문헌 D1 및 D2와 차이가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인용문헌 D3에 셀룰로오스유도체,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비닐피롤리돈유도체 또는 아크릴릭폴리머로 이루어진 필름 형성제에 의해 립스틱 표면이 코팅되어 립스틱의 발한을 억제하고 외관의 광택을 높여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2, 첫번째 단락-세번째 단락 참조).

인용문헌 D1 내지 D3 모두 화장료에 관한 동일 기술 분야임을 고려하여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 D3의 필름형성제에 의한 코팅을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도출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된 조성물에 적용하여 청구항 4의 발명을 구성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4는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인용문헌 D1 내지 D3의 결합에 의해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청구항 5는 인용문헌 D3에 기재된 아크릴릭 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의 조성물 내 함량인 1.0 중량%에 해당합니다 (실시에 8 참조).

청구항 6은 인용문헌 D3에 기재된 아크릴릭 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와 대응됩니다 (실시에 8 참조).

따라서 청구항 5 및 6은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인용문헌 D1 내지 D3의 결합에 의해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1.2.3. 청구항 8-9

청구항 8 및 9는 수상부에 수용성 타르 색소를 부가하고 있다는 점(청구항 8) 및 수용성 색소가 포함된 수상부 및 유분산 색소가 포함된 유상부가 구성되고, 각각의 색소 함량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청구항 9)에서 인용문헌 D1 및 D2와 차이가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인용문헌 D3에 적색 202호, 적색 223호 및 적색 204호의 수용성 타르색소 및 이산화티탄(본원 “유분산 색소”에 해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3 참조).

다만, 각 색소의 함량에서 청구항 9와 차이가 있으나, 상기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된 실험을 통하여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범위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으로서, 별다른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나타나는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용문헌 D1 내지 D3 모두 화장료에 관한 동일 기술 분야임을 고려하여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 D3의 필름형성제에 의한 코팅을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도출된 조성물에 적용하여 청구항 8 및 9의 발명을 구성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8 및 9는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인용문헌 D1 내지 D3의 결합에 의해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1.3. 독립항: 청구항 11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인용문헌 D1에는 유상 및 수상을 함유하는 수중유형 에멀전(본원 “코어부”에 해당)으로 구성되는 립스틱에 관한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1; 실시예 1-3 참조).

청구항 11은 화장료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하여 75 중량% 이상의 유상부를 포함한다는 점(차이점 1) 및 조성물이 필름형성제를 포함하는 코팅부를 포함한다는 점(차이점 2)에서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으나, 차이점 1과 관련하여, 인용문헌 D2에 화장품에 사용되는 조성물 대비 70 중량% 이상 고함량의 유상부를 포함하는 수중유 에멀전이 구성되되, 상기 고함량의 유상부를 갖는 수중유 에멀전은 피부에 적용되어 에몰리언트 오일을 빠르게 방출하거나, 보습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1, 10, 11; 페이지 12, 라인 13-29; 표 1, 2 참조).

또한, 차이점 2와 관련하여, 인용문헌 D3에 셀룰로오스유도체,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비닐피롤리돈유도체 또는 아크릴릭폴리머로 이루어진 필름 형성제에 의해 립스틱 표면이 코팅되어 립스틱의 발한을 억제하고 외관의 광택을 높여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바 (페이지 2, 첫번째 단락-세번째 단락 참조), 이로부터 차이점 2를 도출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입니다.

인용문헌 D1 내지 D3 모두 화장료에 관한 동일 기술 분야임을 고려하여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 D3의 필름형성제에 의한 코팅을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도출된 조성물에 적용하여 청구항 11의 발명을 구성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1은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인용문헌 D1 내지 D3의 결합에 의해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1.4. 청구항 12

청구항 12는 유상부 내 왁스의 함량에서 인용문헌 D1 내지 D3에 기재된 왁스의 함량과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균등한 효과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보통의 반복 실험 등을 통하여 도출 가능한 최적 내지 호적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구항 12는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인용문헌 D1 내지 D3의 결합에 의해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1-12는 산업상 이용가능 합니다 (PCT 제33조(4)).